

【 2015.09.14(월) 강원일보 】

올림픽 사업비 8,253억 요청…추석 전 신규공사 착공

3차 조정안 정부 승인 전망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총 사업비 3차 조정안이 빠르면 추석 전에 정부로 부터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조정에서 지난 2차보다 172억원이 늘어난 8,253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경기장 총 사업비는 당초 6,993억원에서 1차 조정 결과 7,637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 5월 승인된 2차 조정에서 8,063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조정안에서는 기존 경기장을 보

완해 사용하는 컬링경기장 예산이 73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설계감리비 11억원과 공사비 62억원 등이다.

컬링을 제외한 빙상경기장 4곳은 시설별로 사업비 증감이 있다. 남녀 아이스하키와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2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95억원이 줄었으며 설상경기인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역시 24억원이 감액됐다. 경기장 진입도로 사업비도 1차 조정 승인을 앞두고 있다. 진입도로 예산은 16개 노선에 총 5,607억원이다. 1차

조정안에는 유일한 미착공 노선인 진부역 진입도로(1,214억원)를 비롯해 지방도 408호선(562억원), 군도 13호선(519억원)의 조정내역이 담겼다.

진부역 도로와 지방도 408호선은 각각 37억원과 6억원이 감액됐으며 군도 13호선은 25억원이 증액됐다. 진부역 도로는 현재 조달청에 발주신청을 마친 상태로 기재부의 사업비 승인이 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간다. 이 도로가 착공되면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12개와 진입도로 16개 등 모든 올림픽 시설 공사가 본궤도에 오른다. 이성현기자

【 2015.09.14(월) 강원도민일보 】

원주국토관리청 18억3400만원 미지급

국감서 하도급대금 불공정 지적·중기건설 자금난 주원인

중소건설사 자금난의 주 원인인 하도급대금 지급 불공정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새정치·충남공주)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12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248건, 2012년

333건, 2013년 289건, 2014년 249건, 올해는 상반기까지 105건이 적발됐다.

처분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 1002건(8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정지 184건(15%), 과태료 34건, 과징금 4건 순이다. 공공기관의 하도급대금 미지급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의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금액은 총 74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원주국토관리청은 2013년

부터 올 7월까지 5건에 18억34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등 하도급 법령 위반 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은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것이 중론이다.

노승만 강원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강원도의 경우, 영세한 건설사들이 많아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으면 부도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은복

“產災 축소신고 조장하는 PQ 가산점제 폐지해야”

입법조사처 “재해율 따라 보험료 인하… 공상처리 유도”
중대재해 발생 때 입찰참여횟수 제한 등 대안 모색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재해율 가산점제도와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개별실적 요율제’가 산재 은폐를 조장한다며 제도 폐지 의견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13일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재해율이 낮은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현행 PQ제도가 건설현장 산재발생 시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입찰참여 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환산재해율이 평균보다 낮은 건설사는 PQ 신인도 평가에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는다.

입법조사처는 개별실적 요율제도에서도 산재예방 독려 취지와 다른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해가 잦을수록 산재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산재를 감추거나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도 “개별실적 요율제 아래에서 벌어지는 산재 은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 할인감면 혜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제재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산재보험의 취지를 살리려면 개별실적 요율제를 폐지해야 하지만, 큰 폭의 보험료 할인을 받던 기업의 반발과 부작용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지를 산정식에 조정률을 도입해 왜곡된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산재 은폐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어 산재 통계의 신뢰성이나 현행 산재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듦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인데 재해율은 0.7로 OECD 국가 평균 2.7에 못 미친다. 은폐가 의심되는 수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처벌 일변도인 고용부의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대응방식이 사업주들로 하여금 산재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를 꺼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도 산재발생 시 과태료-특별감독-안전보건진단명령-개선계획 이행으로 이어지는 처벌시스템이 공상처리를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응급조치 기록이나 진료 기록을 산업안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주장했다.

또 산재를 공상 처리하면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정상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공상처리 문제를 해결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추정했다.

윤석기자 ysys@

公共공사 '관급자재'에 건설현장 곳곳 차질... 피해 사례 모아보니

"3번 중 2번꼴 납품 지연..." 자재공급에 공사 맞추기 급급

A도로 건설공사에서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현장 인근 소규모 공장에서 레미콘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그런데 이 공장에는 상주인원이 1~2명에 불과하고 레미콘 믹서트럭도 부족해 레미콘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다. 게다가 휴일은 물론 평소에도 길이 즐디거나 경사가 급하다며 믹서트럭이 오지 않거나 나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건설사는 자기 돈을 들여 믹서트럭을 임차해 운행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다.

B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생산능력 과 품질이 검증된 레미콘업체가 현장에서 15분 거리에 있었지만, 발주기관은 15분과 20분, 40분 거리의 다양한 업체들을 레미콘 공급업체로 지정했다. 레미콘은 규정상 출하 후 2시간 하절기 1시간 30분) 내내에 터설해야 하는데 임계시간이 다 돼서야 레미콘이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콘크리트 품질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대한건설협회 회장 초심규에 따르면 공공공사에 관급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못해 건설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항목은 발주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건설사에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발주기관과 자재업체 간 직접 계약으로 건설사가 배제되면서 관급자재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어 제 때 납품과 품질이 확보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C고속도로 확장공사에서는 차선을 통제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해서 설치 시간이 늦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새로 짓는 현장보다 가드레일 주문량이 많지 않아 제조업체의 납품 순위에서 밀렸다. 결국 가드레일 공급이 늦어지면서 공사도 지연됐다.

연간계약 형태로 공급하는 공공공사 건설자재는 이미 확보한 물량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민간공사 등 다른 현장 공급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D도로공

'연간계약' 관급 자재는 이미 확보된 물량 간주 다른 현장부터 공급

제조-시공업체 달라
하자책임 소재 불분명
불량제품이 현장에 와도
발주처-자재 '직접계약'
건설사는 제어장치 없어

수차례 개선 견의했지만
중소기업 보호 명분아래
해마다 대상품 목 확대만

사 현장에서는 통상 3번 중 2번꼴로 레미콘이 제때 공급되자 못했다고 시공사는 전했다.

결국 건설현장에서는 공정에 맞춰 레미콘 등 자재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 공급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 때문에 건설사가 자재업체에 출된다. 이 때문에 건설사가 자재업체에 서로 다른 석재 제품이 납품되는 일도 발생한다. 이에 건설사는 재납품을 요구했

업계는 전했다.

자재업체를 잘못 선정해 차질을 빚은 사례도 있다.

E도로공사 현장에서는 특정규격 생산 능력이 안 되는 레미콘업체를 선정해 발주 기관이 공급업체 선정에 다시 나섰다. 그 런데 입찰이 3차례 유찰되면서 결국 공사 기간이 8개월이나 지연됐다.

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가 달라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도 다반사다.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책임이 모호하면 시설물 품질 관리도 느슨해지게 된다.

실제로 E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는 가드레일 제조업체와 시공업체(하도급업체)가 하자책임을 서로 미뤘고, 공사기간을 맞춰 야 하는 원도급사는 하자 보수비용을 스스로 부담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G경찰서 신축공사에서는 금속제창을 납품받아 시공했는데 비가 오면 창호와 외벽마감이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역시 하자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가리지 못해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재시공 했다.

이 현장에서는 치수가 맞지 않고, 색이 서로 다른 석재 제품이 납품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건설사는 재납품을 요구했

D. 제조업체는 그 정도 오차는 발생할 수 있고, 원하는 색을 정확히 맞출 수 없다고 맞섰다. 건설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

E도로공사 현장에서는 특별규격 생산 능력이 안 되는 레미콘업체를 선정해 발주 기관이 공급업체 선정에 다시 나섰다. 그 런데 입찰이 3차례 유찰되면서 결국 공사 기간이 8개월이나 지연됐다.

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가 달라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도 다반사다.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책임이 모

건설관련 단체들이 품목 축소와 제도 개선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직접 구매 대상

실제로 E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는 가드레일 제조업체와 시공업체(하도급업체)가 하자책임을 서로 미뤘고, 공사기간을 맞춰 야 하는 원도급사는 하자 보수비용을 스스로 부담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또 "중기청과 중기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중소건설시를 회생시키는 것"이라며 "제발 건설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